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-10호

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우체국예금 공익사업에 대한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4. 19 .

우정사업본부장

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

2. 위탁업무

   가.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

   나.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

   다. 장애부모 가정 아동·청소년 멘토링 지원

   라. 그 외 “우본”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